

고양시보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1812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1813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고양시 조례 제1814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고양시 조례 제1815호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고양시 조례 제1816호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고양시 조례 제1817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고양시 조례 제1818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고양시 조례 제1819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고양시 조례 제1820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6-2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3-46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80
고양시 고시 제2016-271호	행신동 620-2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3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고시 제2016-1호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고시	89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6-16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0호선 : 화정~신사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전 열람·공고	93
고양시 공고 제2016-16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3호선 : 고양~광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전 열람·공고	95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12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고양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를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 라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중전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할 수 있다.” 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을 “(주민참여대상공사)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 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 공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제3조(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소관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회계과장 김 석 진
	팀 장 성 명	계약관리1팀장 이 종 신
	담 당 자 성명·전화	차 윤 희 (031-8075-251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1. ~ 3. (생략)</p> <p>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p> <p>5. <u>관련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6. <u>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u></p> <p><신설></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u>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u>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설기술진흥법」.....</p> <p><삭제></p> <p>6. <u>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u></p> <p>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고양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제4조(기능) ①<u>고양시(이하 “시”라 한다).</u>.....</p>

현행	개정
<p>1. ~ 3. (생략) <u><신설></u></p> <p>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생략)</p> <p>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 <u><신설></u></p> <p>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제14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p> <p>1. ~ 9. (생략) <u><신설></u></p> <p>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u></p> <p>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p> <p>6.</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위원의 해촉)<u>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5.</p> <p>제14조(주민참여대상공사)..... <u>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u></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공원 공사</u></p> <p>11.</p>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호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함.(제2조)
 - 위원장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 위원장이었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
- 나. 심의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 가능” 에서 연임 규정을 삭제함.(제3조)
- 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을 추가함.(제4조)
-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소액 수의 계약 대상공사” 에서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로 하고, 대상공사에 ‘공원 공사’ 를 추가함.(제14조)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양시장 최성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13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한다)”로 한다.

1.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중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3. 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4.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제13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 자활기업 "이라 한다)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 를 "자활기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급자" 를 "기초생활수급자" 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급자" 를 "기초생활수급자" 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제17조 제목 중 "자활공동체" 를 "자활기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 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는" 을 "자활기업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공동체가" 를 "자활기업이" 로 한다.

제18조 제목, 제1항 및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 를 각각 "자활기업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 를 "자활기업" 으로 한다.

조례 제1426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2조 중 "2016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담당관 성명	복지정책과 성창석
	팀장 성명	자립지원팀장 박성도
	담당자 성명·전화	최성인 (031-8075-325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저소득주민으로서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20퍼센트 이내)</u></p> <p>2. <u>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부양할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u></p> <p>3. <u>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20퍼센트 이내)</u></p> <p>4. <u>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20퍼센트 이내)</u></p> <p>제13조(사업의 범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자보전</u></p>	<p>제9조(기금결산) ①</p> <p>.....</p> <p>.....</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2조(지원대상)</p> <p>.....</p> <p>.....</p> <p>1.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중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p> <p>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라 한다).....</p> <p>.....</p> <p>.....</p> <p>3. 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p> <p>4.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p> <p>제13조(사업의 범위)</p> <p>.....</p> <p>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p>

현 행	개 정
<p>2. <u>자활공동체</u>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p> <p>3. (생략)</p> <p>4. <u>수급자</u> 및 <u>차상위계층</u>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p> <p>5. (생략)</p> <p>제14조(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u></p> <p>2. <u>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u></p> <p>3. (생략)</p> <p>4. <u>수급자</u>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p> <p>5. (생략)</p> <p>제1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① <u>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u></p> <p>② <u>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④ <u>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u></p>	<p><u>업 “이라 한다”이</u></p> <p>.....</p> <p>2. <u>자활기업</u>.....</p> <p>3. (현행과 같음)</p> <p>4. <u>기초생활수급자</u></p> <p>.....</p> <p>5. (현행과 같음)</p> <p>제14조(지원 대상)</p> <p>.....</p> <p>1. <u>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u></p> <p>2. <u>자활기업</u></p> <p>3. (현행과 같음)</p> <p>4. <u>기초생활수급자</u>.....</p> <p>.....</p> <p>5.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규모) ① <u>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u>.....</p> <p>.....</p> <p>② <u>자활기업은</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자활기업이</u> ...</p> <p>.....</p> <p>.....</p>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제12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 를 “자활기업” 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 다.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부칙 제2조)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양시장 최성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14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1550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노인복지과
입안자	담당관 성명	노인복지과장 홍점수
	팀장 성명	노인지원팀장 박교원
	담당자 성명·전화	김경원 (031-8075-326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u>제11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u></p> <p>부칙<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16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u>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u></p> <p>부칙<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u>2021년 12월 31일</u>.....</p>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고양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함.(제11조)
- 나.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부칙 제2조)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양시장 최성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15호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1398호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아동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아동청소년과 김 운 영
	팀 장 성 명	아동정책팀장 김 경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나 영 (031-8075-335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5조(기금결산)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1398호></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15조(기금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1398호></p> <p>제1조(시행일)</p> <p>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p>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일몰제도 시행으로 아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 12. 31. 만료됨으로써 기금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기금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부칙 제2조)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고양시장 최성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16호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및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문화운동에 시민 자율적 참여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지킴이”란 안전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시민조직을 말한다.
2.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란 각 동별 시민안전지킴이의 대표를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범죄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3조(임무) ① 시민안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
2. 민관협력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시민안전홍보
4. 시민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여성 및 청소년안심귀가 서비스 지원활동
7. 학생의 안전한 등교·하교 지원활동
8. 청소년 안전생활 지원활동
9.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활동
10. 경찰서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11. 안전생활위험 요소(보도블록 파손, 썩크홀, 무단투기 쓰레기, 환경위해요소 등) 점검 및 신고 활동
12. 그 밖에 시민안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민안전지킴이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활동) ① 시민안전지킴이는 대표, 부대표, 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민안전지킴이는 동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해당 동 행정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시민안전지킴이는 지역 안전 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고양시와 협력하여 합동점검, 합동캠페인, 공익 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

③ 연합대는 각 동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등록) ① 시민안전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해당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검토하고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민안전지킴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민안전지킴이 대표는 시민안전지킴이가 해산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전에 발급받은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민안전지킴이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제4조제1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안전지킴이와 연합대의 원활한 시민안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보험료, 순찰차량 유지 경비 등
2.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연합대 사업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연합대와 시민안전지킴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및 장비 등은 제3조의 임무수행과 제5조제2항의 연합대 주관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합대 대장 및 시민안전지킴이 대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제8조(경비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안전지킴이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시민안전지킴이에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시민안전지킴이 대원에 대하여 제3조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안전지킴이 및 모범 시민안전지킴이 대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활동 실적은 「고양시 자원봉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지원경비의 사용 및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연합대와 시민안전지킴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경비를 가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김 수 오
	팀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정책팀장 조 병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경 배 (031-8075-2983)

[별지 제1호서식]

조 장	대 표

(00동)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일지

년 월

활동일시 [날짜(요일), 시간]	활동 인원	참가자	활 동 내 용 (활동동선, 활동내용 등)	비고
월 일 (요일) : ~ :				

[별지 제2-1호서식]

(00동)시민안전지킴이 운영계획

1. 시민안전지킴이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활동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초소) 현황
-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m ²)	설치재원	비 고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활동봉 등 보유장비 현황	활동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 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번호 :

[별지 제2-3호서식]

()시민안전지킴이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00동) 시민안전지킴이 등록증

대 표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신 청 내 용	③ 주 소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사무실(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 설·장 비		
	⑨ 구성연월일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안전지킴이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안전 분야에 대해 시민 스스로 예방활동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를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시민 자율적 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시민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시행, 민관협력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나. 시민안전지킴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다. 시민안전지킴이와 연합대의 원활한 시민안전 활동을 위하여 피복비, 유류비, 야식비 등 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고양시장 최성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17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의2 중 “「고양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34조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7호를 제6호로 한다.

제45조 제목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을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부속건축물의 제한)” 을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으로 한다.

제47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8조 제목 “(공용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을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로 하고,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공용시설보호구역” 을 “공용시설보호지구” 로 한다.

제48조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종전 제14호를 제4호로 한다.

제49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영 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를 “영 77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49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3호를 제4호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제58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한다.

제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6항” 을 “영 제84조제7항” 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시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제60조의2 중 “영 제84조제8항” 을 “영 제84조제9항” 으로 한다.

제60조의4 및 제60조의5를 각각 제60조의5 및 제60조의6으로 하고,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6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1조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5항의 단서”를 “영 제9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를」 제84조” 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로 한다.

별표 3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4 제9호 및 별표 5 제9호 중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을 각각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으로 한다.

별표 18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별표 19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레미콘, 아스콘 공장(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별표 25 중 “(제59조의2 관련)” 을 “(제60조의2 관련)”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도시계획과
입안자	담당관 성명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팀장 성명	도시계획팀장 이재학
	담당자 성명·전화	김화영 (031-8075-307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p>
<p>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부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p>
<p>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p>	<p>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p> <p>.....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p>
<p>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5. (생략)</p>	<p>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p> <p>..... 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현행 제17호에서 이동></p> <p>6. ~ 16. (생략)</p> <p>17. (생략)</p> <p>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생략)</p> <p>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 ② (생략)</p> <p>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2. (생략)</p> <p><현행 제14호에서 이동></p> <p>3. ~ 13. (생략)</p> <p>14. (생략)</p> <p>15. (생략)</p> <p>제48조(공용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u>공용시설 보호구역</u>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현행 제14호에서 이동></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p> <p><현행 제15호에서 이동></p> <p><현행 제16호에서 이동></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u>운수시설</u></p> <p>7. ~ 17. (현행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p> <p><제6호로 이동></p> <p>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현행과 같음)</p> <p>제4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u>운수시설</u></p> <p>4. ~ 14. (현행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p> <p><제3호로 이동></p> <p>15. (현행과 같음)</p> <p>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p> <p>..... <u>공용시설 보호지구</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u>종교시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u>노유자시설</u></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p>

현행	개정
<p>6. ~ 13. (생략)</p> <p>14. (생략)</p> <p>15. (생략)</p> <p>16. (생략)</p> <p>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3. (생략) <u><현행 제13호에서 이동></u></p> <p>4. ~ 6. (생략) <u><현행 제14호에서 이동></u> <u><현행 제15호에서 이동></u></p> <p>7. ~ 12. (생략)</p> <p>13. (생략)</p> <p>14. (생략)</p> <p>15. (생략)</p> <p>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9. ~ 16. (현행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u><제4호로 이동></u> <u><제7호로 이동></u> <u><제8호로 이동></u></p> <p>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u>중교시설</u></p> <p>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u>공장</u></p> <p>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u></p> <p>10. ~ 15. (현행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u><제4호로 이동></u> <u><제8호로 이동></u> <u><제9호로 이동></u></p> <p>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신설></p>	<p>②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신설></p>	<p>③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p> <p>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p> <p>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p> <p>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p>

현행	개정
<p>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4. (생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p>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p>	<p>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 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p> <p>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영 제84조제4항.....</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 4.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 <p>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
<p>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제외한다.</p> <p><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p>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p> <p>.....</p> <p>.....</p> <p>.....</p> <p>.....</p> <p>.....</p> <p>.....</p> <p>.....</p> <p>② 영 제84조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시의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현 행	개 정
<p>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p> <p>1. ~ 2. (생략)</p> <p><신설></p>	<p>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60조의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생략)</p>	<p><u>제60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u></p> <p>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p> <p>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p>
<p>제60조의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생략)</p>	<p>제60조의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현행 제60조의4와 같음)</p>
<p>제60조의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생략)</p>	<p>제60조의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현행 제60조의5와 같음)</p>
<p>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안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p>	<p>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p>⑥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⑦ (생략)</p> <p>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생략)</p> <p>② 영 제93조제5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p> <p>1. (생략)</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p> <p>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p> <p>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p> <p>⑥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p> <p>.....</p> <p>.....</p> <p>.....</p> <p>⑦ (현행과 같음)</p> <p>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93조제6항.....</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현행	개정
<p>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u>별표 8</u>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 4. (생략)</p> <p>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생략)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u>시간제계약직 공무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79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등재대상)「<u>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u>」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u>」 제84조에 따른 <u>룩사향정정 대상토지</u></p> <p>2. (생략)</p> <p>[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u>별표 4</u>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u>별표 4</u>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1. ~ 10. (생략)</p> <p><신설></p>	<p>..... <u>별표 1</u> <u>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u>.....</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u>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u>..... </p> <p>제79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등재대상)「<u>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u>」 제2조제2항제9호..... </p> <p>1.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84조.....</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건축법 시행령</u>」 <u>별표 1</u> 제17호의 <u>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u> <u>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u></p>

현 행	개 정
<p>11. ~ 17. (생략)</p> <p>[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p> <p>10. ~ 16. (생략)</p> <p>[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관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p> <p>10. ~ 16. (생략)</p>	<p>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p> <p>다.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p> <p>12. ~ 18. (현행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p> <p>[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및 카목의 공장</p> <p>10. ~ 16. (현행과 같음)</p> <p>[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관련)</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및 카목의 공장</p> <p>10. ~ 16.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 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 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해당된다)</p> <p>1. ~ 4. (생략)</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 육연구시설 중 <u>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만 해당된다)</u></p> <p>6. ~ 15. (생략)</p>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u>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영 별표 20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p>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 중 <u>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 육시설(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 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 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 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u></p> <p>6. ~ 15. (현행과 같음)</p>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u>레미콘, 아스콘 공장(다만,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하 다)</u></p>

현행	개정
<p>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레미콘, 아스콘 공장(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양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p> <p>5. (생략)</p> <p>[별표 25]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제59조의2 관련)</p> <p>1. ~ 2.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별표 25]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제60조의2 관련)</p> <p>1. ~ 2. (현행과 같음)</p>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전파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및 관련 법령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규정함.(제12조)
-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함.(제51조제3항)
- 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함.(제59조제5항)
- 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함.(제60조제2항)
- 마.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함.(제60조의4)
- 바.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함.
(별표 3 제11호, 별표 4 제9호, 별표 5 제9호)
- 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함.(별표 19 제4호)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양시장 최성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18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9조제1항제2호”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집관거”를 각각 “차집관로”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급수사용개시신고”를 “급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선납하도록”을 각각 “미리내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월분”을 “2개월분”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각각 “공공하수관로”로 한다.

제29조 중 “제52조”를 “제53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농작물의 경작, 식물의 재배를 위한 점용(다만, 수목 식재는 제외)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시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소관과		하수행정과
입안자	과장 성명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팀장 성명	하수행정팀장 김영범
	담당자 성명·전화	임종태 (031-8075-4567)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고양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에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사용요율			
구분 업종	사용구분(m³/월)	m³당 단가(원)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가정용	1-20	423	460
	21-30	706	768
	31이상	847	923
일반용	1-50	824	898
	51-100	1,059	1,153
	101이상	1,244	1,356
대중탕용	1-200	564	615
	201-500	800	870
	501이상	1,106	1,205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m³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단,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이 동일공동주택 내 혼재할 경우 주된 하수배재방식을 적용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하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1-50)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u>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u>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u>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u>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u>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 준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u> 2. 차집관거를 제외한 <u>공공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 확장·수선 및 유지관리</u> <p><u>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략)</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 4. (생략) <p><u>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u>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u>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u></p>	<p><u>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u>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u>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u>「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2호..... 1.<u>차집관로</u>..... <u>차집관로</u>.....<u>하수관로</u>..... 2. <u>차집관로</u>.....<u>공공하수관로</u>.....<u>그 밖에</u></p> <p><u>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u> ②..... 1. 급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2. ~ 4. (현행과 같음)</p> <p><u>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u>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u>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p>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2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u>하수관거</u>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u>하수관거</u>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u>공공하수관거</u>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u>하수관거</u>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u>공공하수관거</u>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 ⑥ (생략)</p> <p>제2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 및 제51조, 제52조에 따라 관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등록)요건 이행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그 밖에 법령 준수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p>	<p>.....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p> <p>.....</p> <p>.....</p> <p>.....</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p> <p>.....</p> <p>.....</p> <p>.....</p> <p>.....<u>하수관로</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하수관로</u>.....</p> <p>.....<u>공공하수관로</u></p> <p>.....<u>하수관로</u></p> <p>.....<u>공공하수관로</u>.....</p> <p>.....</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p> <p>..... <u>제53조</u>.....</p> <p>.....</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2항)

1. (현행과 같음)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사용요율		
	사용구분(㎡/월)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업종	1-20	423	460
	21-30	706	768
	31이상	847	923
가정용	1-50	824	898
	51-100	1,059	1,153
	101이상	1,244	1,356
일반용	1-200	564	615
	201-500	800	870
	501이상	1,106	1,205
대중탕용	1-200	564	615
	201-500	800	870
	501이상	1,106	1,205

주) 1. (현행과 같음)
2. ㎡당 단가 구분
가. 합류식 지역 : 우수우수관로 우수관로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
3.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2항)

1. (생략)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사용요율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2015년부터	
		2013년	2014년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업종	1-20	198	234	261	311	338	
	21-30	330	390	436	519	565	
	31이상	396	468	524	623	679	
가정용	1-50	385	456	510	606	660	
	51-100	495	586	655	779	848	
	101이상	582	688	770	915	997	
일반용	1-200	264	312	349	415	452	
	201-500	374	442	494	588	640	
	501이상	517	611	684	813	886	

주) 1. (생략)
2.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우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결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단,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이 동일공용수터 내 혼재할 경우 수된 하수 배제방식을 적용
3. (생략)

현	행	개	정																																																																						
<p>[별표 3]</p> <p><u>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u></p> <p>(365일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산</th> <th>정</th> <th>기</th> <th>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도로, 철도, 케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td> <td>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td> <td>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td> <td>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u><신 설></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td> <td>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td> <td>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계산 예> (생 략)</p>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케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u><신 설></u>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p>[별표 3]</p> <p><u>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u></p> <p>(365일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산</th> <th>정</th> <th>기</th> <th>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td> <td>농작물의 경작, 식물 의 재배를 위한 점용 (다만 수목 식재는 제외)</td> <td>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 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td> <td></td> <td></td> <td></td> </tr> <tr> <td>5.</td> <td>(현행 제4호와 같음)</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계산 예> (현행과 같음)</p>	구	분	산	정	기	준	1.				2.				3.				4.	농작물의 경작, 식물 의 재배를 위한 점용 (다만 수목 식재는 제외)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 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				5.	(현행 제4호와 같음)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케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u><신 설></u>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구	분	산	정	기	준																																																																				
1.																																																																							
2.																																																																							
3.																																																																							
4.	농작물의 경작, 식물 의 재배를 위한 점용 (다만 수목 식재는 제외)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 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																																																																							
5.	(현행 제4호와 같음)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60% 인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 공공하수도 점용료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세분화하며,
-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의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함.
(제2조, 제3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9조)
- 나.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변경함.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27조)
 - 하수관거 → 하수관로, 차집관거 → 차집관로 등으로 “관거”를 “관로”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다.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통합함.(제7조)
-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6퍼센트 인상함.(별표 1)
- 마. 공공하수도 점용료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세분화함.(별표 3)
- 바.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양시장최성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19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업무 담당소장
 2. 환경보호, 생태하천, 청소행정, 도시계획 및 녹지 업무 담당과장
 3.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입안자	과장 성명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팀장 성명	환경정책팀장 정준배
	담당자 성명·전화	박소현 (031-8075-264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2조(고양시환경위원회)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친화사업소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2조(고양시환경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업무 담당소장 2. 환경보호, 생태하천, 청소행정, 도시계획 및 녹지 업무 담당과장 3.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고양시환경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 에서 “25명 이내” 로 함.
(제22조제2항)
- 나. 고양시환경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환경친화사업소장” 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제22조제3항)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양시장 최성인

2016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1820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고양시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 등 감사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시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에 해당하는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의 신분공개에 대하여는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 단 지 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감사결과보고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제안자 : 고은정, 고종국, 김운남, 김효금, 박시동, 원용희, 이윤승, 임형성, 조현숙 의원

□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되어,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다르게 규정되거나 운영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양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위임의 근거법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함.
(제1조 및 제2조)
- 나.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

고양시 고시 제2016- 2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3-46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번지 일원의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구단위계획(변경) - 특별 계획 구역 6(L1) 세부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1-2호선, 3-46호선]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주소 및 준공 예정일이 변경**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고양시장

1.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대로3-46호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장 (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대로	1	2	35	6,086 (480)	
금회시행	대로	1	2	3.3	7.6	26.4㎡
결정	대로	3	46	28~31	450	
금회시행	대로	3	46	3.0	113.38	33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기존)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 (변경)주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18, 108호(퇴계동)
- 성명 : (주)사람과 미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존) 실시계획인가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 (변경) 2016.11.4. ~ 2016.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도로노선별 편입용지 집계표(㎡) (변경없음)

시설명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관계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대(주)로 1-2	2	일산 서구	대화동	1050 - 184	도	2,526.3	26.4	고양시	국				
소 계						2,526.3	26.4						
대(보)로 3-46	1	일산 서구	대화동	1050 - 176	공	20,158.6	117.2	고양시	국				
	2	일산 서구	대화동	1050 - 184	도	2,526.3	31.7	고양시	국				
	3	일산 서구	대화동	1050 - 185	대	19,553.4	189.7	주식회사 사람과 미래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18 (퇴계동, 미래타워)	케이비부 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수탁 자	신탁원부 제2016-1 689호
소 계						42,238.3	338.6						
합 계						42,238.3	365						

○ 편입 지장물조사

일련번호	지장물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①	일산서구	대화동	1050	176	보차도 경계석	200×250×1,000	40.00	m	고양시	국				
	②					자전거 도로포장	T=7CM	70.66	㎡						
	③					보도 경계석	150×150×1,000	78.77	m						
	④					보도포장	T=6CM	186.42	㎡						
	⑤					콘크리트 포장	T=20CM	37.52	㎡						
	⑥					가로등		2.00	개소						
	⑦					경찰맨홀	사각	1.00	개소						
	⑦					오수맨홀	사각	2.00	개소						
	⑧					신호등 제어기		1.00	개소						
	⑧					한전BOX		1.00	개소						
	①					스트로브젯	H3.0×W1.5	4.00	주						
②					왕벚나무	H4.0×B12	3.00	주							
1	①	일산서구	대화동	1050	184	안전철크스	H=900×W:3000	6.00	m	고양시	국				
	②					보차도 경계석	200×300×1,000	49.00	m						
	③					자전거도로 포장	T=7CM	41.79	㎡						
2	④					보도 경계석	150×150×1,000	32.66	m						
	⑤					보도포장	T=6CM	159.99	㎡						
	⑥					도로 경계석	120×150×1,000	18.46	m						
	④					차량 신호등		1.00	개소						
	④					보행자 신호등		1.00	개소						
	⑤					제수변		2.00	개소						
	⑤					오수맨홀		1.00	개소						
	⑥					SK맨홀		1.00	개소						
	⑥					경찰맨홀		2.00	개소						
	⑦					가로등 전열기		1.00	개소						
	⑦					한전BOX		1.00	개소						
	⑧					블라드		9.00	개소						
	①					중국단풍	H4.5×R30	1.00	주						
	②					홍단풍	H2.5×R8	2.00	주						
③					스트로브젯	H4.0×W2.0	2.00	주							
3	④					중국단풍	H3.0×R10	2.00	주						
	④					중국단풍	H4.0×R20	1.00	주						
	⑤					홍단풍	H2.5×R8	3.00	주						
	⑥					중국단풍	H3.0×R6	16.00	주						
	⑦					회화나무	H3.0×R15	2.00	주						
	⑦					회화나무	H4.0×R20	1.00	주						
	①	일산서구	대화동	1050	185	보차도 경계석	200×300×1,000	50.00	m	주식회사사람과미래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118 (퇴계동, 미래타워)				기반시설은 고양시시설임. 따라서 1050-185지번의 지장물은 없음
	②					자전거도로 포장	T=7CM	89.71	㎡						
	③					보도경계석	150×150×1,000	96.80	m						
	④					보도포장	T=6CM	153.39	㎡						
	⑤					콘크리트포장	T=20CM	39.61	㎡						
⑥					가로등		2.00	개소							
⑦					전기판		1.00	개소							
⑦					오수맨홀		1.00	개소							
⑧					왕벚나무	H4.0×B12	6.00	주							

행신동 620-2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0-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8일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행신동 620-2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0-2 일대	-	증) 9,610.8	9,610.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행신동 620-2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면적 : 9,6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고자 함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30.2	증) 7,580.6	9,610.8	100.0	
주 거 용 지	소 계	-	증) 7,181.9	7,181.9	74.7	
	공동주택	-	증) 5,350.9	5,350.9	55.6	
	주거복합	-	증) 1,831.0	1,831.0	19.1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2,030.2	증) 398.7	2,428.9	25.3	
	도 로	2,030.2	증) 398.7	2,428.9	25.3	

3)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610,300.8	감)5,350.9	10,604,949.9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15,716.2	증)5,350.9	11,721,067.1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53,472.0	-	10,853,472.0	

- 획지 B-1~B-5(행신동 617-13, 617-14, 617-16, 617-17, 617-18)는 건축선계획에 따른 공개공지를 보도로 조성하고 동시에 획지간 공동개발(B-1~B-2, B-3~B-5)을 준수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 획지 C-1(행신동 620-2)은 건축선계획에 따른 공개공지를 보도로 조성하고 동시에 획지분할 가능선에 따라 획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행신동 620-2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지역 변경 면적 : 5,350.9㎡	▶ 대상지는 주변이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높이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둘러싸인 지역임 ▶ 주변 현황과 더불어 가로주택정비사업(획지 A-1)의 추진을 고려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와 함께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111.8	617-58	620-3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29	8~10	국지 도로	111.8	617-58	620-3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2m확폭
기정	소로	3	8	6~13	국지 도로	131.0	619-16	621-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343.0	629-8	650-136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9	6~8.8	국지 도로	343.0	629-8	650-136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2.8m확폭

- 소로 2-29번 일부확폭 2m는 보도로 조성, 소로 3-9번 일부확폭 2.8m 중 1.5m는 보도, 1.3m는 차도로 조성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면적 (㎡)	획 지			토지이용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	7,181.9	A-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8-1 일원	5,350.9	공동주택용지	-
		B-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7-13	217.0	주거복합용지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B-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7-14	270.0	주거복합용지	
		B-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7-16	145.0	주거복합용지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B-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7-17	165.0	주거복합용지	
		B-5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7-18	172.0	주거복합용지	
		C-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0-2	862.0	주거복합용지	-

- 획지B-1~B-2(행신동 617-13, 617-14), 획지B-3~B-5(행신동 617-16, 617-17, 617-18)는 획지간 공동개발(권장) 계획
- 획지C-1은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이 가능하며, 획지분할 가능선은 획지면적(862.0㎡)의 20%(172.4㎡) 이내에서 조정 가능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획지 A-1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8-1번지 일대	용 도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15층 이하
		규모 및 배치	▶ 주동배치 : 판상형 또는 연도형 ▶ 4호연립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 50m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의 이격거리는 4m이상 ▶ 고양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형태 및 외관	▶ 자연경관과 건축물 등 도시환경과 조화위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 ▶ 고양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색 채	▶ 주조색 : 건축물의 외벽면중 4/5사용을 권장, 저채도색 사용 ▶ 보조색 : 발코니, 계단실 등에 사용하여 변화기능, 1/5 사용 ▶ 강조색 : 건축물 개성 연출, 보조색 1/20사용 권장 ▶ 고양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색채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5m -단, 부대·복리시설 제외		

○ 획지 B-1-B-5

- 기존 획지별 건축 및 도로 조성시(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 B-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7-13번지 일대	용 도	▶ 허용용도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3호 관련 [별표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5m - 단 북측도로(소로3-9)변 2.8m 남측도로(소로2-29)변 2.0m

- 소로 2-29번 일부확폭 2m는 보도로 조성, 소로 3-9번 일부확폭 2.8m 중 1.5m는 보도, 1.3m는 차도로 조성
- 상한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 완화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상한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 완화용적률 = 기준용적률(180%) × 공개공지 면적 × ½ ÷ 대지면적

- 공동개발 건축 및 도로 조성시(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 B-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7-13번지 일대	용 도	▶ 허용용도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4호 관련 [별표4]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을 제외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5호 발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별도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5m - 단 북측도로(소로3-9)변 2.8m 남측도로(소로2-29)변 2.0m

- 소로 2-29번 일부확폭 2m는 보도로 조성, 소로 3-9번 일부확폭 2.8m 중 1.5m는 보도, 1.3m는 차도로 조성

○ 획지 C-1

- 기존획지 유지 및 보도 조성시(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0-2번지	용 도	▶ 허용용도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3호 관련 [별표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5m - 단 북측도로(소로3-9)변 2.8m 남측도로(소로2-29)변 2.0m

- 소로 2-29번 일부확폭 2m는 보도로 조성, 소로 3-9번 일부확폭 2.8m 중 1.5m는 보도, 1.3m는 차도로 조성
- 상한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 완화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상한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 없음
- 완화용적률 = 기준용적률(180%) × 공개공지 면적 × ½ ÷ 대지면적

- 획지분할 및 보도 조성시(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0-2번지	용 도	▶ 허용용도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4호 관련 [별표4]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을 제외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5호 발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별도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5m - 단 북측도로(소로3-9)변 2.8m 남측도로(소로2-29)변 2.0m

- 소로 2-29번 일부확폭 2m는 보도로 조성, 소로 3-9번 일부확폭 2.8m 중 1.5m는 보도, 1.3m는 차도로 조성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8-1번지 일대	보행동선	▶ 아파트 동간의 보행동선 연결로 보행통행의 안전 유도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 유도	
		차량동 선 및 주차	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로 교차부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외 구간
			주차장	▶ 획지A-1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장애인 주차장 포함)

2.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개제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고시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 11. 8.

고양시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시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소음 관리지역)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구간은「별표1」과 같다.

제3조(교통소음 관리기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관리지역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은「별표2」와 같다.

제4조(규제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구간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음기 사용금지
2. 속도제한 :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 규정
3. 기타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5조(위반자의 조치) 자동차 운행에 따른 규제기준 위반자는「도로교통법」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6조(적용 배제)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배제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기타 고양시장이 자동차의 운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구간

일련 번호	대 상 도 로			도 시 계 획 용 도 지 역	관 리 지 역	도 로 여 건	비 고
	도 로 명	연 장 (km)	구 간				
1	권율대로	9	강매IC ~ 신원지하차도	주거 지역	서정마을 3·4·5·6·7·10단지, 도래울마을 1·2단지, 삼송마을 14·15단지, 신원마을 6·9단지, 서정초등학교,서정중학교, 아름초등학교	왕복8 차선	추가
2	서정로	0.5	서정마을사거리 ~ 서정마을 10단지아파트	주거 지역	서정마을 6·8·9·10단지	왕복4 차선	〃
3	서오릉로	5.4	성사IC ~ 서오릉검문소	주거 지역	도래울마을 3단지	왕복6 차선	〃
4	도래울로	1	도래울마을 6단지아파트 ~ 서오릉지하차도	주거 지역	도래울마을 2·3·5단지, 도래울중학교, 도래울초등학교	왕복4 차선	〃

[별표 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도 로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06:00 ~ 22:00)	야 간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 음 (LeqdB(A))	68	58
	진 동 (dB(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 지역	소 음 (LeqdB(A))	73	63
	진 동 (dB(V))	70	65

참 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고양시 공고 제2016 - 16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0호선 : 화정~신사간 도로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전 열람·공고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28-10번지 ~ 향동동 산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 3-30호선 : 화정~신사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 작성 제출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1월 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28-10번지 ~ 향동동 산5-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도시계획도로(대로3-30호선)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3	30	26.5 ~ 33.0	7,140	422,471	대로2-6호선 화정동 428-10과	향동동 산5-1임	일반 도로	법면포함폭:28m~101m
공구분할 (1구간)	대로	3	30	26.5 ~ 33.0	4,000	247,047	도내동 92-20전	향동동 산5-1임	일반 도로	공구분할 : 1구간 법면포함폭:28m~101m
공구분할 (2-1구간)	대로	3	30	26.5 ~ 33.0	960	38,310	광로3-6호선 도내동 526-6전	도내동 92-20전	일반 도로	공구분할 : 2-1구간 법면포함폭:28m~101m
공구분할 (2-2구간)	대로	3	30	26.5 ~ 33.0	2,180	137,114	대로2-6호선 화정동 428-10과	광로3-6호선 도내동 526-6전	일반 도로	공구분할 : 2-2구간 법면포함폭:28m~101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고양시장(공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체인번호(5+540~5+900)의 사면구간에 대해 고양시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6. 12. 31.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변경없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3호선 : 고양~광탄간 도로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전 열람·공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6번지 ~ 고양동 91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33호선 : 고양~광탄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 작성 제출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1월 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786 ~ 고양동918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도시계획도로(대로3-33호선)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장(m)	면적(m ²)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대로	3	33	25~60	1,980.0	-	
금회시행	대로	3	33	25	220.0	6,353.3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공사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6. 12. 31.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변경없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게재생략”